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71439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2017.12.07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2025.02.12

www.samcheongdong.com samcheongdong@naver.com

삼청동멸치국수 정보공개서

(주)삼청은「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 .

(주)삼청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 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 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주 소 : 인천시 부평구 신트리로22번길8-6, 201호(부평동)

전 화 : 1899-5525 팩 스 : 02-786-7501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010 5048 4595 임한경이사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田.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Ⅷ.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Ⅷ. 교육ㆍ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 <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 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 문가에게 자문을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등록한 정보공개서 (http://franchise.ftc.go.kr)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 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 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민원참여'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 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 ◇ 참고로, 가맹본부가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여 공정위 등에서 심사 중인 경우에는 실제 내용과 본 정보공개서가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으시면 가맹본부에게 변경등록 신청여부 및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 반드시 확인받으시고, 필요할 경우 추후 변경등록이 완료될 경우 변경된 정보공개서의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ㅇ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 호	영업표지			주 소					
	삼청동멸치국수		인천시 부평구 신트리로22번길8-6, 201호(부평동)						
(주)삼청	법인 설립등기일	사업자등	록일	<u> </u>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 ,	2016.12.28	2017.01	.02	김윤영		1899-5525		02-786-7501	
	법인등록번호	12011	1-08554	405 사업자		등록번호	5	67-81-00477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ㅇ 당사의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인천시 부평구 신트리로22번길8-6, 201호(부평동)				
대표이사	대표이사 김윤영	삼청동멸치국수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윤영	1899-5525	02-786-7501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삼청동멸치국수		평구 신트리로22 201호(부평동)	번길8-6,		
이사	임한경		대표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김윤영	1899-5525	02-786-7501		

3. 가맹본부의 인수 • 합병 내역

ο 당사는 바로 전 3년 동안 다른 기업(가맹사업 영업표지를 포함하여 가맹사업을 경영한 기업)을 인수・합병(다른 기업의 가맹 관련 사업을 양수 또는 양도한 경우도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기업에 인수・합병된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삼청동멸치국수이라 합니다)의 내용

ㅇ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삼청동멸치국수	국수요리 전문점
상 호	삼청동멸치국수 OO점	당사는 보통 해당 지역명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상표(서비스표)	位对京の資料子學	등록번호 : 제40-1275136호
광 고	Thy FO 建剂子冷	
그 밖의 영업표지		

5. 바로 전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1	46,317	203,611	-157,294	94,787	-16,262	-14,441
2022	52,985	110,503	-57,517	226,348	99,615	99,776
2023	96,830	12,319	84,510	378,387	141,315	142,027

- ㅇ 당사는 2016년 12월 28일 설립된 법인으로 2017년 1월 2일부터 가맹사업이 시작됨...
- ◆ [별첨 1]참조
- 2) 당사의 바로 전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3)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ㅇ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교한어구	ME	2 41	기간	직위	담당 업무				
김유영	김윤영	김윤영 대표이사	2016.05.10 ~ 2016.12.31	인터넷쇼핑몰(쿠니)대표	회사 업무 총괄				
가맹사업			2016.12.28 ~ 현재	(주)삼청동대표	가맹사업 총괄				
관련임원	임한경	사내이사	2019.12.28 ~ 현재	(주)삼청동이사	가맹점관리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o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	수(명)	직원수(명)
·-	상근	비상근	()
2023년 12월 31일	1	1	-

^{◆ [}별첨 2.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참조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o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한 사실이 없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ㅇ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 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번호 및 등록번호	소유자 (출원신청자)	존속기간 만료일 (가맹본부의 사용기간)
'성 가 로가구우' (상표권)	해당상표를 사용할 수 있는 권한	2017.01.10 출원 2017.08.08 등록	출원번호 제40-2017-0003724 등록번호 제40-1275136호	김 윤 영	2027.08.08

o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o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Π. 가맹본부의 삼청동멸치국수 가맹사업 현황

1. 삼청동멸치국수를 시작한 날 : 2016년 05월 24일

2. 삼청동멸치국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의이름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삼청	삼청동멸치국수	김윤영	2017.01.02 ~ 현재	인천시 부평구 신트리로22번길8-6, 201호(부평동)

3. 삼청동멸치국수 업종

영업표지	업종						
사서도며비그스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삼성동별지국수	한식	멸치국수					

4. 바로 전 3년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삼청동멸치국수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단위:개)

	2021.12.31.			2	022.12.3	1.	2023.12.31.		
지역	전 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 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 체	가맹점 수	직영점 수
전체	7	7	-	10	10	-	10	10	-
서울	1	1	-	1	1	-	2	2	-
부산	-	-	-	-	-	-	-	-	-
대구	-	-	-	-	-	-	-	-	-
인천	2	2	-	2	2	-	3	3	_
광주	-	-	-	-	-	-	-	-	-
대전	-	-	-	-	-	-	-	-	-
울산	-	-	-	-	-	-	-	-	-
세종	-	-	-	-	-	-	-	-	-



경기	4	4	-	7	7	-	5	5	-
강원	-	-	-	-	-	-	-	-	-
충북	-	-	-	-	-	-	-	-	-
충남	-	-	-	-	-	-	-	-	-
전북	-	-	-	-	-	-	-	-	-
전남	-	-	-	-	-	-	-	-	-
경북	-	-	-	-	-	-	-	-	-
경남	-	-	-	-	-	-	-	-	-
제주	-	-	-	-	-	-	-	-	-

5. 바로 전 3년간 삼청동멸치국수 가맹점 수

(단위:개)

					\	L 11: 11/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1	12	-	5	-	-	7
2022	7	3	_	-	-	10
2023	10	3	3		1	10

^{◆ [}별첨 3] 가맹점 사업자현황 참조

6. 삼청동멸치국수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o 당사는 삼청동멸치국수 외에도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고 있는 가맹사업의 바로 전 3년간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7. 바로 전 사업연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천원,부가세미포함)



		2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지역	2023년말 가맹점수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편 매출액(연간 ¹ 매출액(비고
	1001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10	231,296	21,962	375,099	46,431	85,675	8,583	
서울	2	해당없음						5곳 미만
부산	-	해당없음						5곳 미만
대구	-	해당없음						5곳 미만
인천	3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	해당없음						5곳 미만
대전	_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	해당없음						5곳 미만
세종	-	해당없음						5곳 미만
경기	5	211,683	18,841	375,099	46,431	85,675	8,583	
강원	-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북	-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북	-	해당없음						5곳 미만
전남	-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북	-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남	-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	해당없음			5곳 미만

- o 각가맹점의 2023년 6개월이상 운영한 매출액을 기준하여 년간매출액산정 대상으로 하였음.
- o 전체가맹점10곳중에서 8곳 매출자료만 표기함(년6개월미만운영 매장제외).

8. [삼청동멸치국수]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삼청동멸치국수]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중인 가맹점 수 ^①	평균 영업기간 ^②
2023	10	2년4개월

- ①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를 기준
- ② 직전 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의 최초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직전 사업연도 말까지의 영업한 일수를 모두 더하여 직전사업연도 말 영업 중인 가맹점 수로 나눈 기간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ㅇ 당사는 정보공개일 현재 지사를 두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ㆍ판촉 지출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8. 가맹금 예치

o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국민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소	전화번호
국민은행	부평중앙지점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203-14	032-528-0271

- ㅇ 자세한 예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o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국민은행에 계약 체결 다음 날까지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국민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공인인증서를 다운받아 설치한 후 "예치서비스"를 클릭한 다음 (주)삼청을 찾아 금액을 입력하면 됩니다. o 귀하는 또한 국민은행에서 발급한 예치증서를 보관하고 있어야 하며 아래 주의사항을 반드시 알아 두어야 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 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 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 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 3.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 우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9.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o 당사는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고 있으며 별도의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하고 있지 않습니다.



皿.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의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등

o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 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o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로 받은 유죄의 확정판결과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o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 상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o 귀하가 삼청동멸치국수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ㅇ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 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 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1,000				
가맹비	7,700	계약 체결일	당사가 가맹사업법에 의하여 가맹금 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일부 또는 전부 반환	계약금 성격의 금전	특수상권 11,000
교육비	3,300	계약·체결일	교육 전 계약해지 시	교육시작 후	

◆백화점,대형쇼핑몰,대형지하상가 형태의 특수상권에 개설시 가맹비는 일급11,000,000원(부가세포함)으로 한다.

2) 보증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보증금은 계약 종료시 전액이 귀하에게 반환되는 대가입니다. 다만, 귀하의 귀책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액	지급 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총계	2,000			
보증금	2,000	게야 체격이	계약이 기간만료 또는 해지로 종료된 때에는 상품/자재의 대금 등 가맹계약상의 이행 및 채무 또는 손해배상액의 지급이 있는 경우 보증금과 상계 후 잔여금액을 정산서와 함께 귀하가 계약종료 후의 조치사항을 이행한 날로부터 즉시 상환합니다.	



-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의 자세한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금액(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합계	13,000
가맹비	7,700
교육비	3,300
보증금	2,000

- o 단, 당사가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에 가입할 경우 귀하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계좌에 입금하여 야 하며, 별도 가맹금 예치를 하지 않습니다.
 - 4)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11, ==1, 1 1 ==1)						
구분	지급대상	금액	면적 3.3m ^² 당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비고
총계		44,000	2,904			50㎡ (15평기준)
인테리어 (주방공사포함)	미정	23,100	1,525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7일이내	공사 전 계약취소	
의자,탁자/포스기	광명주방/ 케이엠피시 스템	3,300	218	입고전 7일 이내	미공급시	
주방기구/홀설비 및 집기	미래주방	13,200	871	인테리어 공사 시작 전 7일이내	공사 전 계약취소	평형, 구조에 따라 변동가능
홍보 및 판촉물	가맹본부	1,650	109	물품공급 3일 이내	개점전 계약취소	인쇄물, 앞치마,메뉴판, 명함등
초도물품	가맹본부	2,750	181	물품공급 3일 이내	(소요비용 제외)	
	71 +11 - 7 C	간판(440만	원),간판 철거, ·	공조, 어닝, 인허가,	가스공사,	매장상황 및
нгло	자체조달	닥트, 화장실	J, 냉난방기, 외	부 상하수도공사, 오	l부 샤시,	점주 선택에
별도금액	및	점포 외부공	사, 방수공사,	소방설비, 전기증설,		따라 변동될 수
	가맹본부	온수보일러,	튀김기, 식기시	세척기 등		있는 금액

- o 위 표의 금액은 50m² (15평), 의탁자 7세트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가맹점 규모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ㅇ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o 개점을 위해 필요한 모든 품목은 가맹사업 전체의 통일성과 독창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당사가 정한 매뉴얼 및 사양에 따라 설치/구매/유지하여야 합니다. 직접 설치/구매 시 3.3㎡당 (33만원, VAT포함)의 기획관리비가 청구됩니다. 품목 일부를 직접 설치/구매할 경우 계약체결 시 당사와 별도 협의 합니다..



-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 ㅇ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 주체	선정 기준
가맹희망자	가맹희망자가 원하는 지역 파악 → 지역지정→ 가맹희망자 직접조사 또는 가맹희망자 가 전문업체에 의뢰 → 당사 및 가맹희망자가 동의 시 확정 ※점포계약의 최종 의사결정권은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기준
- o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종업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당사와 경영 마인드 부합시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이 아닐것/만20세이상일것
종업원	특별한 기준 없음	만18세이상일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 • 공급업체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8) 한편, 귀하는 당사에 가맹금을 일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 1) 비용 부담
- o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광고분담금에 대한 세부 분담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지급대상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비고
광고/판촉비	가맹본부		내용은 V-8-1을 사기 바랍니다.	광고미시행	광고 시행후	
개점후교육비	가맹본부	110	교육시작 7일이내	교육미실시	교육실시후	교육 필요시 지급
지연이자	가맹본부	연 24%	지급기일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날까지	-	-	정해진 금전지급의무의 지급기한을 경과했을 시 부담
영업표지 변경등에 따른 간판비용 변경	미정	실비	주문 전	-	-	부득이한 경우 변경될 수 있으며 교체비용은 당사자의 귀책사유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로열티부담**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 될 수
					없는사유
로 열 티	가맹본부	매출액의 매월2.2%	익월5일까지	가맹본부의	가맹점이 영업지도 및 관리를
			가맹본부에 납부	귀책사유로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지급하는
			1021 1121	계약이 종료	소멸성 대가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4)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ㅇ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항목	내 용	시 기	비고
매장청결	담당자 매장방문 후 청결도 확인	1회/4개월	
친절도	담당자 매장방문 후 친절도 확인	1회/4개월	문의 : 관리팀
품질관리	담당자 매장방문 후 품질 확인 후 가맹점 확인 및 서명	1회/2주	(032-506-1778)
회계관리	가맹점사업자의 매출누락에 대한 회계조사 실시	1년 1회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 o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금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별도)

구분	금액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수 없는 사유	비고
총계	100				
추가교육비	100	교육시작 후 7일이내	교육시작 1일 전에 계약해지	교육후	추가교육필요시 (1일1명기준)
점포이전비	협의하여 분담	점포 이전 후 10일이내	점포이전에 합의하지 않을 경우	점포 이전후	점포이전 합의시

- 당사는 계약종료 시점에 점포 위치에 대한 정기 점검을 실시하고 있어, 가맹점 운영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당사가 판단하여 협의한 결과 가맹점도 이에 동의하며 점포 이전비가 추가 될 수 있습니다.
- o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기 위해서 추가 교육비는 1일 1명/100(단위: 천원, 부가세 별도)로 지급하며 점포 이전비는 합의 후 협의하여 분담합니다.
-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해 계약종료 시 조치사항
-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o 당사가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가맹계약을 종료하고 계약관계를 탈퇴 할수 있습니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양수한 사업자(가맹본부)와의 계약 관계 유지를 원할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가맹관계를 탈퇴할 경우, 당사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에 해당되므로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 o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이 유효기간 만료 등계속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개발하고 개발하는 비용은 당사가 부담하며, 가맹점사업자의 간판 변경 등의 비용은 가맹점사업자와 당사가 협의하여 분담합니다.
- 다) 가맹본부가 해당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 o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 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 o 귀하가 운영하는 삼청동멸치국수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는 귀하가 당사에 지급해 야할 비용은 없습니다. 당사로부터 승인받은 양수인은 교육비와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하며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교육을 받아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신규가맹계약체결을 원하는 경우에는 가맹비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귀하는 원활한 양도양수를 위하여 양수인에게 회사의 제도, 규약, 금전적 지 급의무등을 설명하는 등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 o 가맹계약 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해지에 의해 계약이 종료된 경우 귀하는 즉시 당사의 영업표지 등 의지식재산권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하며(홈페이지나 블로그, 지역정보 등 인터넷상의 사용도 포함), 당사로부터 교부받은 일체의 자료도 반환하여야 합니다. 이의 철거 · 원상복구의 비용은 귀하가 부담합니다. 다만, 당사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가 부담합니다.
- o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o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 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1) 귀하가 삼청동멸치국수를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구입 및 임차현황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나) 주요 품목^①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



3. 상품 • 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o 당사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 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o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는 상품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 o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 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상품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 책임	비고
멸치국수			
비빔국수			
오뎅꼬치멸치국수			
냉김치말이국수			
칼국수			
부대칼국수			
수제비	가맹본부에서 정한		
라볶이	메뉴 외에는 추각 혹은 삭제하고 판매할 수	2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 및 미시정시	
멸치국수보쌈세트	없음.	해지하겠다는 서면 통지 후 미시정시 해약가능	
비비국수돈까스세트	메뉴의 레서피를 무단으로 변경하는		
얼큰김치수제비	것도 금지됨.		
들깨수제비			
육개장칼국수			
왕만두			
주먹밥			
김밥			
콩국수			
열무국수			권장

-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 o 당사는 상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고객에 대해 상품 용역을 판매하지 않아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거래상대방 (고객)	상품 용역명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시책임	비고
18세 미만	주류	거래상대방별로 기재된 제품은 판매할 수 없음	2개월간의 기간을 두고 2회 이상의 시정요구 및 미 시정시 해지하겠다는 서면 통지후 미시정시 해약가능	

- ㅇ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 용역을 판매하지 않습니다.
-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 o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 용역명	권장가격(단위 : 원)	가격 통보	비고
멸치국수	4,900		
비빔국수	6,900		
오뎅꼬치멸치국수	5,900		
냉김치말이국수	6,900		
칼국수	6,900		
부대칼국수	7,900		
수제비	7,500		
라볶이	4,900	홈페이지에 통지	23년 12월 기준
멸치국수보쌈세트	9,500		
비비국수돈까스세트	11,500		
얼큰김치수제비	7,900		
들깨수제비	7,900		
육개장칼국수	7,900		
왕만두	3,500		
주먹밥	1,000		
김밥	2,000		
콩국수	6,500		
열무국수	6,500		권장

o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화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 1) 독점적 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 o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 o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 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중요한 변경 변제	가맹본부	계열회사
국수를 판매하는 가맹사업	삼청동멸치국수	해당없음

- 2) 영업지역 설정기준
- ㅇ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 기준	설정방법
가맹점소재지를 중심으로 반경 500m	가맹계약서 (가맹계약서 별지에 표시할 수 있음)
단 특수상권(백화점, 마트, 시장, 지하상가, 복합쇼핑몰등)은 행정구역과 상관없이 별도의 영업지역으로 인정	가맹계약서 (가맹계약서 별지에 표시할 수 있음)

-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 o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인정되는 경우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 터 90일 사이에 가맹점사업자에 게 영업지역 재조정 등 조건 변 경에 대한 통지 → 변경된 계약 조건에 대한 가맹점사업자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및 계약 객시	가맹계약기간 만료 60일 전까지 동이어보 하시 동이가 있는 경 9

-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 o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삼청동멸치국수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 액을 청구하는 행위

- 5)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내의 대리점 등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해당없음
- 7) 그 밖에 영업지역에 관한 내용 : 해당없음
-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연도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
2023	100%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3	해당없음	해당없음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 o 삼청동멸치국수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 시 계약기간은 계약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 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 습니다.

수 서	기간(계약만료일:
ت ۱۸ اد	D-day)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 니까?	
예→B, 아니오→D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 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 o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o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이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2조 3항
o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귀하가 수 락하지 아니한 경우	32조 3항
o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을 하지 못한 경우	32조 3항
ㅇ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판매기법을 지키지 않은 경우	32조 3항
o 삼청동멸치국수 경영에 필수적인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한 방침을 지키지 않은 경우	32조 3항
o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교육 훈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만, 교육 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32조 3항

-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 ㅇ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ㅇ 가맹계약상의 금전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33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9조 영업지역 규정을 위반한 경우	33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11조 인테리어 및 설비 등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33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14조 교육·훈련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33조 1항
ㅇ 가맹계약서 제16조 감독 및 시정요구 규정을 위반한 경우	33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19조 광고 규정을 위반한 경우	33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21조 영업의 표준화 규정을 위반한 경우	33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22조 구입강제품목과 공급가격 및 공급가격 결정기준을 위반한 경우	33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26조 영업일 규정을 위반한 경우	33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28조 보고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3조 1항
o 가맹계약서 제30조 영업의 양도 규정을 위반한 경우	33조 1항
ㅇ 가맹계약서 제35조 영업비밀유지의무 및 경업금지의무 규정을 위반한 경우	33조 1항

-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 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계 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 o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즉시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ㅇ 가맹점사업자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33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33조 2항
o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으로 가맹점사업자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 영할 수 없게 된 경우	33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33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33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법 제14조제1항 본문에 따른 가맹본부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 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 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가맹본부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법 제 14조제1항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 한 경우는 제외한다.	ᅁᄌᅁᆎ
ㅇ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33조 2항
o 가맹점사업자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33조 2항
ㅇ 가맹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33조 2항

-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 o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당사와 귀하의 서면 합의를 거쳐 계약 내용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수정계약서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ქ(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맹점사업자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동의 여부 회신, 동의가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양도・상속 및 대리행사

-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ㅇ 당사는 가맹점운영권의 환매와 관련한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 o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양수인 면담 포함)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양도 계약 체결 → 가맹본부와의 가맹계약체결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관리팀

- o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있습니다 이 경우 양수인은 가맹비를 추가로 납입하여야 합니다..
- o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점운영권의 양도신청과 함께 가맹점의 집기, 설비, 시설물, 인테리어 등의 점검을 의뢰하고 교체·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교체·보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 o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 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할 경우에는 당사에 사전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 하여야 합니다.
- o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구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 범위	절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상속인 사후 통지시	모든 권리의무	양도절차와 동일	교육수료 및 교육비 납입
대리행사	본부 승인 시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업무위탁	본부 승인 시 가능	-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 • 감독

- 1) 경업금지의 범위
- o 당사는 계약기간동안 귀하가 삼청동멸치국수와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 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여 당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귀하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 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고
일반인에게 식사류를 제공하면서 국수를 주메뉴로 판매하는 업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담 당팀 검토(시장조사 포함, 30일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무이 과리던

-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 ㅇ 당사는 삼청동멸치국수의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 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고
제한없음	주6일 월25일 이상	문의 : 관리팀 (032-506-1778)

o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10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ㅇ 귀하는 무단으로 휴업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어 당사와 사전 협의한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 o 귀하가 부득이 휴업하고자 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당사에게 휴업개시 희망일 7일 전까지 신청하여야 합니다.
- O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3에 의거 오전 0시 또는 1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매출이 영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비하여 저조하여 3개월간 영업손실이 발생하거나, 질병의 발생과 치료 등 불가피 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당사에 영업시간 단축을 요청하고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 ㅇ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사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권장 종업원수	직접 근무 여부	대체 가능 인력	비고
1명 이상	직접 근무	점주의 배우자, 직계가족	점주의 부재시 가맹본에 사전통보

-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 o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를 정기적으로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 • 감독 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 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회/4개월	문의: 관리팀	
	10 1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032-506-1778)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1히//개워	문의: 관리팀	
[건글소	→ 관리표 작성 → 완료	1회/4개월	(032-506-1778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1회/2주	문의: 관리팀	
62 24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14/27	(032-506-1778	

[※] 시기는 변동될 수 있습니다.



9. 광고 및 판촉 활동

- 1)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분담 기준
- o 당사는 삼청동멸치국수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담비율			
구분	광고 성격	본사	가맹점	분담 절차	비고
구· ㄱ	상품광고	광고비 50%	광고비 50%	계획 공고 → 가맹점의 참여 여부 사전동의(50%이상)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 광고 -	상품광고 +가맹점모집광고			결정 → 가맹점부담액	이벤트행사 (전국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	없음	제시(명세서)	(E 13·1)
	할인행사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할인금액 (소비자가) 50%	행사계획 공고 →	판촉행사 동의
개별행사	증정행사	증정상품 출하가 50%사	증정상품 출하가 50%	가맹점부담액 제시 → 가맹점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절차를 거친 후 전체 가맹점 사업자의
	팜플렛 등 제작	판촉물 제작비용 50%	판촉물 제작비용 50%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70%이상의 동의시 전체적용

o 전국단위 광고의 가맹점부담액은 가맹점부담액 총금액을 가맹점 매장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다만, <mark>사전약정관련</mark> 가맹본부 및 가맹점사업자가 광고·판촉행사의 약정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가맹계약과 <mark>별도로 체결</mark>해야 한다.

-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가 스스로 또는 다른 가맹점사업자와 함께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특별하게 필요한 절차는 없습니다.

10.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 o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 o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사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 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 o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o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액의 예정으로서 위약금을 청구하거나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서 손해배상 관련 조항

제35조 (영업비밀유지의무, 경업금지의무)

- ① 을은 계약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갑의 조리법 등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된다.
- ② 을은 갑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 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갑의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다.
- ③ 을은 계약의 존속 중에 갑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명의로 갑의 영업과 동종의 영업을 하지 않는다.
- ④ 을이 제1항 내지 제3항을 위반하여 갑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민·형사상의 책임을 부담한다.

제36조 (손해배상)

이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본 계약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계약위반에 대한 위약금으로 "을"은 "갑"에게 금일천만원(₩10,000,000)(부가세별도)를 지급하여야 한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 • 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o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계		75일 내외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14일	
사업 설명ㆍ상담	- 정보공개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 현황문서 제공 - 가맹계약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14일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1)~4)를 참고하시기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1일	바랍니다.
점포실측/설계	- 투자비 산출	10일	
공사착수	- 공사실시	30일	
교육실시	- 메뉴 및 서비스 교육 (공사기간중 실시)	3일	
영업설비 집기 입고	- 냉장고등 입고 - 그릇 등 입고	2일	
초도물품입고	- 식자재등 입고	1일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당일	

- o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 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 o 귀하는 본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 이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변호사나 가맹거래사를 제외하고 귀하 께서 선택하신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 o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 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 대화와 협상으로 분쟁이 해결되지 아니할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 (연락처: 1588-1490, 홈페이지: http://www.kofair.or.kr) 또는 시·도의 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다른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있습니다.
- o 중재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법적 분쟁에 관한 소송은 민사소송법상의 관할법원에 제기합니다. 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가 관할법원에 대해 약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o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 는 비용의 일부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분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 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 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이 위행나 이 모든 이 의 결함 사업을 이 나 모든 이 의 등의 사업을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이	○ 간판교체 비용 ○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 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서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무슨 무슨 이 의 이일부 이 의 이일부 이 의 이 의 이 의 부 등 이 의 무슨 무슨 이 비청 등 이 의 구 이 가 다 하 한 이 의 부 등 이 의 구 이 의 본 분 한 기 가 가 이 의 를 하 이 의 부 등 이 의 를 하 이 의 부 등 이 의 부 등 이 의 를 하 이 의 부 등 이 의 를 하 이 의 부 등 이 의 부 등 이 의 를 하 이 의 부 등 이 의 를 하 이 의 부 등 이 의 를 하 이 의 부 등 이 의 를 하 이 의 부 등 이 의 를 하 이 의 부 등 이 의 를 하 이 의 부 등 이 의 를 하 이 의 부 등 이 의 를 하 이 의 부 등 이 의 를 하 이 의 부 등 이 의 를 하 이 의 부 등 이 의 를 하 이 의 부 등 이 의 를 하 이 의 부 등 이 의 를 하 이 의 부 등 이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의	○점포환경개선일로 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학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가능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	---	--



2. 판매촉진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ㅇ 당사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o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고
가맹본부 요청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 (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 단 및 지도 관계자의 성명, 소 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 자에게제시→경영지도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 점사업자에게 직접방문하여경영 지도결과 및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 로제시하고이를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관리팀 (032-506-1778)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촉진, 고객관리, 위생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 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7]일 이내에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직접 방문하여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서면으로 제시하고 이를 설명	가맹점부담 1일 1인당 일금일십만원 (₩100,000) <부가세별도>	문의 : 관리팀

4. 신용 제공 등 내역

ㅇ 당사는 귀하에게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0 해당사항 없음



WⅢ. 교육 · 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o 당사는 삼청동멸치국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한	비고
신규 교육	회사소개 음식가공 POS사용, 입금 방법등	실습교육 집단강의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 교육
보수 교육	신메뉴 가공 종업원 관리 실무등	실습교육	사유발생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o 귀하가 삼청동멸치국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최소시간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비고
신규 교육	7일	3,300	최초 계약시 이수
보수 교육	3일	110	필요시

3. 교육・훈련의 주체

○ 교육 • 훈련은 가맹계약을 맺는 당사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 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한, 가맹계약 당사자가 원하여 당사자 외 직원도 같이 교육을 받게 되면 인원 추가에 따라 비용도 추가 됩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o 귀하가 기한 내 신규 교육 또는 보수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물품공급중단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육 불참에 대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재계약거절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0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당사는 직영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 정보공개서 내용 문의 >

- ◇ 이상의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문의 사항이 있거나 정보공개서와 다른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당사(1899-5525)로 연락 주시면 친절하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관련 내용이 궁금하신 경우에는 공정거래위원회 고객지원담당관실(044-200-4010) 또는 가맹거래과(help@ftc.go.kr)로 문의하십시 오. 개별 정보공개서 내용에 관한 문의는 받지 않고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정보공개서는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정보제공시스템(http://franchise.ftc.go.kr)에서 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항목에 기재된 내용(중 일부)은 개인정보 · 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일반 국민에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을 확인하고자 하는 경우,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 인천광역시장 -